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22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6년 03월 26일 (목)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1 롯데캐슬파인힐 2층 엑스퍼트 아카데미  
송파러닝센터 L3 강의실  
(※ 대표문의전화 : 02-3400-0525)

## 3. 회의 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1.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6기(2025.1.1 ~ 2025.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25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범진 선임의 건(이사회)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의 건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에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에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개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지참)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주주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여러명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한 주주 전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주식회사 이퓨처  
대표이사 이기현 (직인생략)

[ 별첨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23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좌동</p> <p>②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 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 상법개정 적용</p>
<p>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좌동</p> <p>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상법개정 적용</p>
<p>제32조(이사의 수) ①당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7인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p> <p>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32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 상법개정 적용 및 이사수 변경</p>
<p>제38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제38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p>	<p>- 상법개정 적용</p>

<p>③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 기간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좌동</p> <p>④좌동</p>	
<p>제38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상법개정 적용</p>
<p>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당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p> <p>③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p> <p>④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p> <p>⑤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p>	<p>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좌동</p> <p>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여야 한다.</p> <p>③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p> <p>④좌동</p> <p>⑤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p>	<p>- 상법개정 적용</p>

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9조 개정규정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제32조, 제38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2027년 0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신설

**제 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범진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최종학력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국적
박범진	1971-02-21	3년	재선임	(주)이퓨처 사업본부 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타인	이사회	대한민국

**제 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의 건**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이사의 수(독립이사수)	5(2)	7(3)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200,000,000	1,300,000,000

